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파리지사)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주요 변경사항

유럽연합, 주석산스테아릴(STEARYL TARTRATE)을 유럽 승인 식품 첨가물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함

- 주석산스테아릴은 제과류 등에 첨가되는 첨가물로서 위원회 규정 (EU) No 1333/2008의 부록 II에 따라 식품 첨가물로서 승인 되었음. 이에 따라 유럽 식품 첨가물 식별 번호 E 483이 할당됨.
- 2020년 3월 11일 유럽식품안전청은 주석산스테아릴(E 483)을 식품 첨가물로서 재평가한 과학적 견해를 발표함. 이 평가에 따르면, 주석산스테아릴에 대한 유전독성 및 독성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물질의 허용가능 일일 섭취량이 확인불가한것으로 판명됨.
- 이로 인해 2021년 1월 19일 유럽위원회는 주석산스테아릴에 관한 기술적 및 과학적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공개 공고를 발표함. 하지만 어떤 기업도 독성에 관한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. 결국 안전성 재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음.
- 따라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독성학적 데이터가 없는 주석산스테아릴(E 483)은 유럽 승인 식품 첨가물 목록에서 삭제됨.

* 출처: 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OJ:L_202302379

2. 시사점

- 이 규정은 2023년 9월 29일에 개정되었으나,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제품에 대한 6개월의 과도기간을 허용함. 따라서 이 개정안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 관련 업체는 이 규정 본격 적용이 되는 일정을 고려하여, 향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II

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통관동향 등 이슈

유럽연합, 보존제 및 산도 조절제로서의 완충식초(buffered vinegar)
관련 규정의 수정

- 2021년 3월 유럽위원회는 다양한 식품군에 완충식초를 보존제 및 산도 조절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요청을 받음. 이에 EFSA(유럽식품안전청)은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. 2022년 7월 1일자 평가서에 완충식초의 주 재료인 아세트산은 아세트 이온으로 분해되며, 이 이온은 인간의 식이 및 인체의 자연 구성성분으로서, 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폭넓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므로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.

2. 변동사항

- 위원회 규정 (EC) No 1333/2008의 부록II 파트 C 에는 모든 첨가제 그룹을 명시 함. 그 중 파트 C의 그룹 I 에는 (색소 및 감미료를 제외한) 식품 첨가물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 그룹의 첨가물은

일일 섭취량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(위 규정 3조 2항에 따라) 많은 식품에서의 사용이 이미 승인된 바 있음. EFSA의 안전성 평가와 함께 완충식초는 (EC) No 1333/2008의 부록II 파트 C 그룹 I에 포함될 수 있게 됨. 또한 유럽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별 번호인 E 267이 완충식초에 할당됨.

* 출처 : 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uriserv%3AOJ.L_.2023.241.01.0073.01.ENG&toc=OJ%3AL%3A2023%3A241%3ATOC

3. 시사점

- 이번 유럽위원회의 규정수정과 함께 완충식초의 사용에 제약이 사라짐. 완충식초는 식품 보존제로써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4. 기타 주의사항 등

- 완충식초(buffered vinegar)는 이중발효(알코올 및 (식)초 발효)를 통해 농산물(목재 및 셀룰로스 제외)로만 생산되어야 하며 유럽 표준 EN 13188:2000 을 준수해야 함.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통관거부사례 - 기준월(10월) 보고된 사례 없음

**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2. 시사점

- 특이사항 없음.